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41

발의연월일: 2024. 8. 27.

발 의 자:이해식・박상혁・박용갑

한병도 • 임호선 • 신정훈

김원이 · 장철민 · 황명선

서영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 편집, 합성 또는 가공을 하는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 있음.

그러나 성적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경우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성적 영상물의 경우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되었을 뿐만아니라 텔레그램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운로드 방식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하여 그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적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 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 ③ (생 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u>④</u> 상습으로 제1항부터 <u>제3항</u>	⑤제4항		
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까지의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